

의안번호	2217147
의 퇴 인	김태선의원
회 답 일	2026.3.4.
추계번호	26B104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의2 (구인광고의 모니터링 등) 신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직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구직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여야 함(제1항) 1. 거짓·과장 고용 정보 2. 국내외 불법 고용 정보 3. 그 밖에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 조건 정보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기준·방법 및 절차는 사업자의 규모, 운영 형태 및 정보제공 방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5조의2 (구인광고의 모니터링 등)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직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위하여 거짓·과장 고용 정보 등¹⁾이 구직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부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모니터링의 기준·방법 및 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하고,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정부의 구인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대상의 수와 지원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1)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모니터링 해야하는 구인광고는 다음과 같음

1. 거짓·과장 고용 정보
2. 국내외 불법 고용 정보
3. 그 밖에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 조건 정보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